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5

제출일자: 2019. 8. 19.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제안이유

복무조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직원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복무조례 반영

1) 신규 임용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2) 연가 당겨쓰기 세부기준 마련

3)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4)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확대(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나. 직원의 평생교육 및 후생복지를 위해 본인 및 직계가족 학교 입학·졸업식 참석 특별휴가 신설

다. 조문 내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세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5. 27. ~ 6. 15. [20일간]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규율"을 "행동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를 "법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0조제1항 중 "공무원이"를 "소속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으로, "공무원의"를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1조제4항 본문 중 "병가중"을 "병가 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은 본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를 "있을 경우에는"으로,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공무원 4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본인 및 직계가족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7.9.2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 략) ②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동률----------.
제9조(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 략)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제18조(연가일수) ①(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 3일 6월이상 ~ 1년미만 / 6일 1년이상 ~ 2년미만 / 9일 2년이상 ~ 3년미만 /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 20일 6년이상 ~ / 21일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소속공무원의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공무원이 ----------. ----------. ⑥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현 행	개 정 안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4년 이상 / 10일 ----------.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공제)④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④ ---------- 병가 중 ----------. ----------.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 ---------- 있을 경우에는 ----------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공무원 4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본인 및 직계가족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이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진구 공무원의 복무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총무과 최 건(450-7117)